

II 공동계정 도입 이전 예금보험기금 체계

1. 예금보험기금 체계의 변화

- 영국은 2001년부터 통합 예금보험기금 체계인 FSCS(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)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금융업권별 개별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운영함.¹⁾
 - 1982년 2월 예금지급이 불가능한 예금수취 금융회사 정리업무를 위해 예금보호위원회와 예금보호기금(Deposit Protection Fund)을 설립함.
 - 1979년 4월에는 예금수취 금융회사에 대한 면허제 도입, 예금보호제도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(Banking Act)을 제정함.
 - 1975년에는 보험회사 파산으로부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보호위원회(Policyholders Protection Board)를 설립함.
 - 1988년에는 부실 투자회사 고객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자 보호기구(Investors Compensation Scheme)를 설립함.
 - 이외에도 주택공제조합 투자자보호기구(Building Societies Investor Protection Scheme), 우애공제조합보호기구(Friendly Societies Protection Scheme) 등을 도입함.
- 이후 금융권의 겸업화 진전으로 기존의 업권별 감독체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, 2000년 6월 금융서비스시장법(FSMA :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)을 제정하면서 FSCS를 설립함.

1) FSA(1997), "Consumer compensation", p.9.

- FSMA에 따라 모든 금융서비스업의 규제·감독을 금융감독청(FSA : Financial Service Authority)으로 일원화하고, 통합 예금보험 기금인 FSCS를 설립하여 기존의 다양한 보호기구를 통합함.

〈표 1〉 FSCS 도입이후 금융권별 보호한도

금융업권	보호한도	주요내용
예금	31,700 파운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초 2,000 파운드 : 100% • 2,000~35,000 파운드 : 90% 보호
투자	48,000 파운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초 30,000 파운드 : 100% • 30,000~50,000 파운드 : 90% 보호
모기지	48,000 파운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초 30,000 파운드 : 100% • 30,000~50,000 파운드 : 90% 보호
장기보험 (생명보험, 연금)	무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초 2,000 파운드 : 100% • 2,000 파운드 초과 : 90% 보호
손해보험	무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강제보험 : 100% • 임의보험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초 2,000 파운드 : 100% - 2,000 파운드 초과 : 90% 보호
보험 자문	무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강제보험 : 100% • 임의보험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초 2,000 파운드 : 100% - 2,000 파운드 초과 : 90% 보호

자료 : Oxera(2006), "Funding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", p.4.

2. 공동계정 도입 직전 예금보험기금 체계

가. 보험료 적립체계

■ FSCS의 운영은 사후각출방식(pay as you go)이 원칙이나, 유사시 자금투입의 신속성을 위해 상시준비기금(standing fund)²⁾을 적립함.³⁾

○ FSCS는 금융권별로 분리된 계정에 기금을 적립하고, 서로 업무 성격이 유사한 금융회사가 각 계정별로 분담금을 적립함.

- 업권별 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운영비용의 절감, 기금의 안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으나, 운영비용 분담, 업권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음.

- 그러나 업권별로 계정을 분리해서 운영할 경우 전체 금융산업에 대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면서, 기금 적립 및 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함.

■ FSCS는 보험료를 예금수취기관, 보험, 투자회사, 모기지, 보험중개 등 5개의 하위그룹(sub-scheme)으로 구분하여 부과함.⁴⁾

○ 각 하위그룹은 영업활동 등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납부그룹(contribution group)으로 구분됨.

- 이에 따라 금융회사를 인가받은 업무 범위에 따라 총 11개의 납부그룹으로 분류하며, 겸영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두 개 이상의 하위그룹에 소속됨.

2) 향후 1년 간 소요가 예상되는 기금을 부도 추이, 부도 건당 보험금 청구·지급 금액, 회수율 등을 감안하여 추정함.

3) FSA(2001), "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Draft Funding Rules", pp.9, 36.

_____(2001), "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Funding Rules" : Feedback on CP86 and 'final' text, p.3.

4) Oxera(2006), "Funding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", p.5.

〈표 2〉 보험료 납부그룹 구분

하위그룹	납부그룹	주요 영업활동 대상
예 금	A1 : 예금	• 예금
보 험	A3 : 손해보험	• 일반보험 계약
	A4 : 생명보험	• 장기보험 계약
투 자	A7 : 펀드매니저	• 자산운영
	A9 : AUT, ACDs Depositories 매니저	• 투자모집기관 설립, 운영 등 • 인가 투자신탁 등
	A10 : 자본거래	• 자기매매업
	A12 : 자문 브로커(고객자산 수탁)	• 대리인으로서 투자거래 • 투자 거래 및 계약체결 등
	A13 : 자문 브로커(고객자산 미수탁)	
A14 : 기업연금 자문회사	• 기업연금 자문업	
모기지	A18 : 모기지 자문·알선업자	• 모기지 자문·알선업
보험중개	A19 : 손해보험 중개업자	• 일반 보험중개업

자료 : Oxera(2006), "Funding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", p.5.

■ FSCS의 금융회사별 보험료 부담의 경우 기금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비용은 모든 금융업권이 함께 부담하되, 개별 금융권 소비자에 대한 보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금융업권에서 부담함.⁵⁾

■ FSCS의 보험료는 경영비용보험료(management expense levy)와 보상비용보험료(compensation costs levy)로 구성됨.⁶⁾

○ 경영비용보험료는 FSCS의 기능 수행 중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을 의미하며, 이는 기본비용(base costs), 특별비용(specific costs), 설립비용(establishment costs) 등으로 구분됨.⁷⁾⁸⁾

5) FSA(2001), "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Draft Funding Rules", p.29.

6) Oxera(2006), "Funding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", p.4.

7) FSMA의 제223조 3항.

8) FSA(2001), "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Funding Rules": Feedback on CP86 and 'final' text, Annex B 13.2.7-13.2.9.

- 기본비용은 기금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FSCS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급여 및 감사 비용 등이 포함되며 모든 부보금융회사가 납부대상임.
 - 특별비용은 하위계정 운영 및 보상금 지급업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FSCS 일반직원에 대한 급여 및 법적 비용 등을 포함함. 동 비용은 보상금 지급요청 건수 및 채무불이행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비용발생과 관련이 있는 그룹에만 부과됨.
 - 설립비용은 FSCS 설립과 관련된 비용으로 모든 부보금융회사가 납부대상이며 초기 3년간 부과 가능함.
- 보상비용보험료는 부보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자산을 돌려주지 못하여 금융소비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, FSCS가 손실보상을 위해 지급한 비용임.⁹⁾
- FSCS는 기 발생(또는 향후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)한 보상비용에 대해서는 보상비용 발생과 관련된 납부그룹의 금융회사에 할당함.

〈표 3〉 FSCS 비용의 종류

구 분		주요내용	분담금 할당 대상
경영비용	기본비용	기구운영을 위한 주요 비용	전 부보금융회사
	특별비용	손실 보상금 산정, 보상업무 처리 등으로 인한 비용	해당 납부그룹 내의 부보금융회사
	설립비용	기구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비용	전 부보금융회사
보상비용	보상비용	금융소비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	해당 납부그룹 내의 부보금융회사

자료 : 예금보호공사(2006), 『금융소비자 보호제도』

9) FSA(2001), "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Funding Rules": Feedback on CP86 and 'final' text, Annex B 13.2.11.

나. 보험료 부과시기 및 한도

■ FSCS는 보험료를 과거에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보험료 수준과 향후 1년 이내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납부그룹별로 징수함.¹⁰⁾

- 개별 분담률은 하위그룹별로 수입보험료, 펀드규모, 내부통제인수 등 개별지표를 적용하여 산출함.
- 기금이 부족 시 예상 지출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고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부과하여 각출 가능함.
 - 연간 업권별 보험료 최고 한도가 예금수취회사는 총 보호예금의 0.3%, 보험사는 수입보험료의 0.8%, 투자회사는 총 4억 파운드임.

〈표 4〉 납부그룹별 보험료 부과 기준 및 한도

하위그룹	납 부 그 룰	부과기준	부과한도
예 금	A1 : 예금수취기관	보호예금	0.3%
보 험	A3 : 손해보험사	순수입보험료	0.8%
	A4 : 생명보험사		
투 자	A7 : 펀드매니저	운영펀드규모	총 £4억
	A9 : 집합투자기구운영·보관회사	총 수입	
	A10 : 자기자본 딜러	거래자 수	
	A12 : 자문 브로커(고객자산 수탁)	내부통제인 수	
	A13 : 자문 브로커(고객자산 미수탁)		
A14 : 기업금융 자문사			
모기지	A18 : 모기지 자문·알선사	연 수입	0.8%
보험중개	A19 : 손해보험 판매회사		

자료 : Oxera(2006), "Funding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", pp.5-6.

10) FSA(2001), "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Funding Rules" : Feedback on CP86 and 'final' text, Annex B

- FSCS는 하위그룹 내에서 초과기금이 발생할 경우, 납부한 예금 보험료를 해당 회사에 상환하고 있음.¹¹⁾
- 향후 12개월 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초과 기금이 발생하는 경우 하위그룹에 납부 예금 보험료를 상환함.

11) FSA(2001), "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Funding Rules", p.27(3.78).